

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1203
등록일자	2015.1.26.
결재일자	2015.1.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관리1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조은영	김지윤	이상현	전결 01/26 이진형
협 조	광고물관리2팀장 특별휴가		

신당동217번지 일대 옥외광고물 허가및 신고 연장처리 추진계획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신당동 217번지 일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연장처리 추진계획

2005년도에 허가 처리된 신당동 217번지 일대(동평화 시장, 청평화 시장)의 옥외 광고물이 허가 만료(3년) 되었으나 재 연장신고가 누락되어 있어 허가 연장 처리를 하고자 함

I 근거법규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3(이행강제금)

II 배 경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한 청계천 일대 상가에 대한 간판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일괄 인·허가 처리 되었으며,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3년 마다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나, 광고주의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무주간판이 증가 하고 있어 허가 만료 된 광고물에 대해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허가 연장 처리를 하고자 함

III 현 황

- 개 요 : 2005년 청계천 간판 개선 사업으로 일괄 인·허가 처리
- 장 소 : 신당동 217번지(동평화 시장, 청평화 시장)

■ 최초 허가 : 2005년 162개

■ 허가 및 만료 현황

연장신고년 도 별	2005년 (최초허가)	2008년 만 료	2011년 만 료	2014년 (10.20.만료)	2015년	
					허가	만료
수량	162개	94개	15개	37개	16개	146개

IV 문제점

- 광고주의 재연장 신고 누락으로 무주간판이 증가하고 미신고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리청 기간연장 홍보부족으로 **재 연장 신고하는 광고주의 불만 증가**
- 광고물 인.허가 연장 미처리로 불법 광고물 증가

V 처리사항

- 최초허가와 광고물 규격과 관리자가 변동사항이 없을시
→ 표시연장 신고 처리
- 최초허가와 광고물 규격은 동일하나 관리자가 변동 시
→ 관리자변경신고 및 표시연장 신고 처리
- 최초허가와 광고물 규격이 변동 있을시
→ 신규 신고 처리

VI 행정사항

- 재연장 신고 누락된 광고주에 광고물 신고 협조공문 발송
-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의 상인회와 협조하여 연장신고 처리절차 홍보
- 미신고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